

수 신 수신처 참조

제 목 건강보험·국민연금 「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」 안내

---

1.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2. 다만, 건설업 현장은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\*을 충족하는 경우 본사와 구분하여 **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**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당해현장 준공전까지 「**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**」를 반드시 **이행**하여야 합니다.

\* 공사계약기간 1개월이상, 계약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(또는 내역서에 보험료 반영)

3. 「**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**」를 이행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·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, **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서 타 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**됩니다.

4. 하지만, 일부 회원사의 경우 「**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**」와 관계없이 “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 모두 건강보험·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”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 점검 시 보험료 추징 문제가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.

5. 이에, 「**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**」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귀 시·도회(협의회) 회원사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건설현장 건강보험(국민연금) 적용 실무 1부. 끝.

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신 홍



수신처 시·도회 회장, 업종별협의회 회장

---

담당자 사원 이혜진 주임 이은미 과장 조성호 부장 이한규 실장 김영승

시 행 전건협 기술 제1332호 (2017. 9. 11)

우 07071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(신대방동, 전문건설회관 18층) / <http://www.kosca.or.kr>

전화 02-3284-1070 / 전송 02-3284-1045 / 전자우편 [lee406046@kosca.or.kr](mailto:lee406046@kosca.or.kr)